

건설기술도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 예외일 수 없다!

Construction Industry Shall not Exception from Product Liability



글 / 文鏞洙
 (Moon, Jang Soo)
 건축사공학기술사, 공학박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제6,7기 중앙건설심의위원(현), 한국기술사회 이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전담관리실장.
 E-mail: jsmoon@kiest.org

A construction industry responsibility of Product Liability Act shall be an accident by defect itself to respond quickly to the different customer demands.

Therefore Fail safe & Fool proof concepts are requested strongly constructor a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design-engineering, construction stage in an attempt to eradicate mistakes and defect-itself.

The construction activities cope with incidents with 3E(Engineering, Enforcement, Educa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life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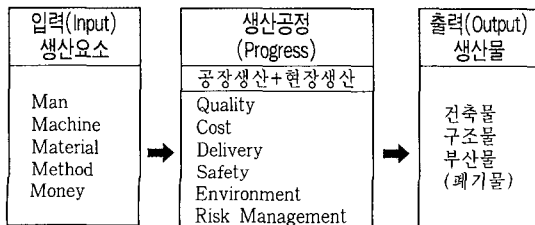
The correspondence strategy for PL is the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PS(Product Safety) PLD(Product Liability Defense).

1. 건설기술의 의미

1-1. 건설생산

■ 건설생산이란?

건설생산에는 자재·기계·노동력·에너지·정보 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각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에 의해 목적하는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것을 건설생산이라고 하고, 그런 생산 활동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장생산과 현장생산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정의 INPUT에 의해서 상응의 OUTPUT을 얻기 위한 변환과정을 시스템이라고 부르지만 건설생산도 공장생산과 현장생산으로 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생산의 존재가 건축의 특징이며 시공이라고 하면 현장생산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 1> 건설생산의 물류 흐름

근래에는 현장생산이 적어지고 공장생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 설계와 시공

건설생산에 있어서 “정보의 흐름”은 설계단계와 시공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설계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까하는 계획에 중점이 있으며 시공은 이 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한다고 하는 의미로부터 관리에 중점이 있다. 구조물의 기능·성능을 정하고 형태를 정하는 것은 분명하게 설계의 역할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서 실시할까하는 생산방법에 관계된 문제는 설계단계에서도 고려해야 할 일이지만 “시공단계”에서 주요과제이다.

건설이외의 생산에는 개략설계부터 제조물의 완성시까지 같은 장소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건설현장은 개별적으로 산재된 부지에다 일품수주생산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른 경우가 많다.

■ 시공의 자세

건설생산에 있어서 설계와 시공의 관계는 음악에 있어서 작곡과 연주에 대응시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런 경우 설계도서는 악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에 충실하게 연주하는 것만이 좋은 연주라고는 말할 수 없다.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건설시공의 경우에도 주어진 설계범위에서 가능한 좋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시공측면의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설계는 시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설계측면에서는 시공에 관한 지식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그것을 인식한 다음에 시공에 임해야 한다. 또 치수의 정도, 품질, 마감의 정도 등 불확실한 대로 남겨진 문제도 많다. 설계도서로부터 설계의도를 읽어내고 설계도서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건설기술 현황

1945년을 기점으로 하는 건설의 출발은 암울했던 전후시대를 맞아 미미하게 시작되었고, 60년대 이후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제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전반기에 걸쳐서 중동지역 건설 진출은 선진외국의 건설기술을 도입하는 일대전환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격동기적인 시대를 거치면서 건설기술은 기초적인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성장으로 파생되는 문제와 이로 인한 어려움 또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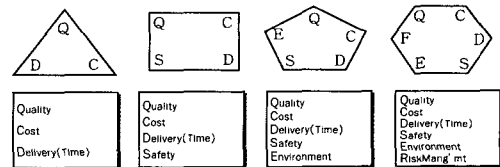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6.25이후 반세기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IMF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된다.

■ 건설사업관리의 변화

건설관리는 '60년대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새로운 관리의 축을 이루어 왔다. 즉 초기에는 『품질·원가·공정』을 주축으로 하던 것이 중동건설경기와 더불어 『안전』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건설안전이 중요시되었다. 경제발전과 88서울 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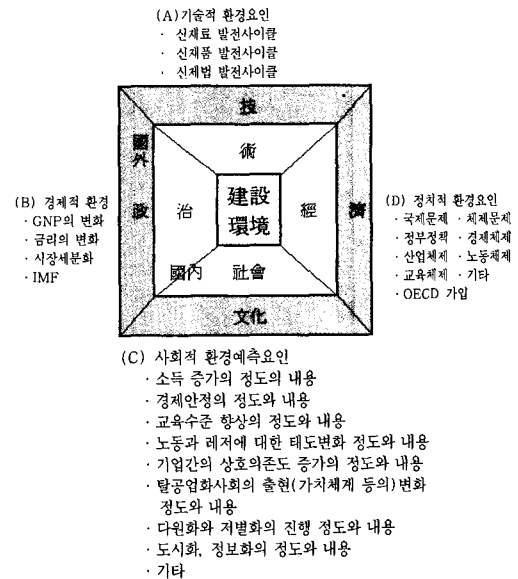
이후 GNP의 급상승과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환경』이라는 새로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생산위주의 단계에서 소비자위주의 시장구조가 형성되면서 A/S, Recall, 나아가 제조물책임을 망라한 Risk Management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건설사업관리의 변화



■ 국내 건설기술 현안 및 국제환경 여건 변화

건설환경은 기술적·정치적·사회문화적·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내와 국외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되고 이를 중심으로 변화를 읽을 수가 있다



2. PL법의 주요 골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PL법(Product

Liability : PL)이라 하며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법 제2조제1호)

(2)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제3호 및 법 제3조제2항)

(3)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으로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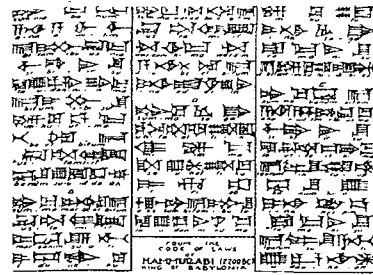
(4)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조)

(5)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법 제6조)

(6) 책임기간의 제한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 BC 2200년전 함무라비 법의 제조물책임

함무라비법전은 BC 2200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결함에 대한 PL, A/S, 하자보수 등 "동태복수법"에 의한 제반 배상관계를 명



시하고 있어 PL법에 관한 한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 A. 만약 건축자가 사람을 위해 지은 집의 건축이 잘못되어 세워진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건축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다.
- B. 만약 집이 붕괴되어 집주인의 자식이 사망하면 건축자의 자식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 C. 만약 집이 붕괴되어 집주인의 노예가 사망했다면 건축자는 사망한 노예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노예를 집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 D. 만약 집이 붕괴되어 재산이 파괴되었다면 건축자는 그 재산이 얼마일지라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 건축자의 공사잘못으로 집이 붕괴되었다면 건축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집을 재건시켜야 한다.
- E. 만약 건축자가 사람을 위해 집을 지은 후 그 건설이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아 벽이 무너지면 건축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벽을 보강해야 한다.

■ 리콜(Recall)과 PL과의 관계

한편 Recall이란 “제품의 결함 및 하자에 대해 해당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수리/교환/환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A/S 개념과는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A/S는 상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소비자의 불만 및 시정요구가 있을 때 불만고객개인의 제품에 한해 필요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Recall은 일단 출하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문제가 예상될 경우 소비자의 요구여부에 관계없이 문제품목 전체를 대상

으로 예방차원의 필요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Recall이 PL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예방조치임에는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PL법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자발적 Recall이 많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반대적인 나라에서는 강제적 Recall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Recall은 PL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것보다는 제품의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제조자나 판매자의 도의적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PL법상의 제조물의 요건

PL법상의 건설부문의 제조물 요건을 보면 제조물은 『동산(動産)이어야 한다』 이 법률에서는 부동산은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 또한 제조물이나냐의 여부는 유통된 시점에서 책임주체가 마다 판단한다. 사고 시에 부동산의 일부로 되었던 동산이더라도 인도된 시점에서 동산이고 당해 결함과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동산의 제조업자 등은 PL을 적용 받게 된다. 일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EC지침에서도 부동산은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EC지침에서는 제조물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합되거나 그 구성부분으로 된 이후에도 독립의 소유권의 객체로서의 동산성이 없더라도 제조물책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조물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에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제조자의 책임이 아닌 동산의 제조자에게 책임을 문제 삼게 된다.

미국에서도 리스테이트먼트 402A조가 동산공급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한 조문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량으로 건축되어 판매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따라서 건설분야는 소비자의 수요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개별 제조물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가공처리 된 제품에 이르기까지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것으로 모두가 동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PL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제조물 결함의 종류

일반적으로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하자(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에는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간단한 품질의 하자는 본법의 대상이 아니다.

(1) 제조상의 결함 -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 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변경되어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즉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이를 부실시공이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불량제품·장비로 야기되는 중대결함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설계상의 결함 -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설계자·시공자는 반드시 설계를 검토해야하는 책무가 부가되는 것이다.

(3) 표시상의 결함 -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나 지시 또는 제조물에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제조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시상의 결

함이 된다. 이를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

한 예로 국내의 신발제조업체가 조강화를 미국에 수출하였는데 긴 운동화 끈 때문에 조강을 하던 사람이 신발끈을 밟고 넘어지게 되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PL소송에서 100만불 이상을 배상하게 되었다. 이는 신발끈 사용방법을 설명·경고하지 않은 사례이다.

3. PL법이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영향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 리콜제도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PL제도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제조물의 설계·개발·제조시·공·표시·검사·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므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2) 소비자보호의 충실 -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또는 제3자)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결함의 존재』여부라는 객관적 사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종전보다 용이해 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더 충실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 PL법 도입으로 인해 제품안전대책 추진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가 될 것이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기업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이다.

■ 부정적인 영향

(1) 제조원가의 부담 : PL법 시행으로 인해 제조물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종전보다 엄격해지므로 기업에게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드

는 비용과 PL보험 가입비 등이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인력자원의 낭비 : PL과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 자료 작성과 준비에 많은 인원과 시간이 낭비되고 고액의 비용이 투입되게 된다.

(3) 신제품개발의 지연 :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기업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제품의 안전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제품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신제품의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고, 제조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가부담이 될 수 있다.

(4) 기업의 이미지 실추 : PL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된 손해배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에 손해가 생기는 것보다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줄 수 있어 영업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

4. PL소송의 사례

1-1. 외국의 사례

가. 석면소송사건(asbestos)



석면소송은 많은 소송이 전 미국 각지에서 빈발하였다. 그리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의 지불에 견디지 못하여 최대의 석면제조업자인 맨빌(Manville)사가 도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 사고의 발생

석면(石綿)은 내열성, 절연성 등에 우수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건물이나 배관 등의 단열재, 아스베스트 시멘트관, 자동차의 브레이크나 클러치판, 전기코드의 피복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석면의 분진을 계속적으로 흡입하면 그 분진이 폐를 뚫 찢어 침착되어 호흡장애나 폐기종 등의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 후 1964년에 석면분진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피해자의 구제문제가 제조물책임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 보렐사건의 판결

원고 보렐¹⁾은 복수의 회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공업용 단열재의 작업을 34년간에 걸쳐 담당하였지만 그 작업과정에서 석면의 분진을 흡입하여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 그 때문에 원고는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결여의 결함을 주장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항소법원은 「제조업자는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 경고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여 58,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였다.

■ 소송의 폭발적인 증가

보렐사건 판결이후 제조물책임 소송이 전 미국각지에서 제기되어 1986년 후반까지 석면소송은 사건 수 3만건(추정 4만건), 제소된 석면제조업자는 300개사를 넘게 되었다. Jury Verdict Research Inc. 조사에 의하면 1986년 시점에서 매월 700건의 석면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후 30년간에 최종적으로 2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2-2. 국내의 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옷장 경첩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수 접수되어 이에 대한 안전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구 대부분이 기능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안전에는 소홀하여

어린이들이 가구를 사용하거나 놀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사례

2001. 2. 10 경기도 ○○에 사는 어린이가 의자를 놓고 어린이용 옷장에서 옷을 꺼내던 중 넘어지면서 옷장 경첩에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끼어 끝마디가 절단됨. 병원에 이송되어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성장점이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 조사결과

· 성인 손가락 관절도 쉽게 낄 정도로 넓은 경첩 틈새, 볼펜도 쉽게 부러져…….

- 가구의 틈새간격을 조사한 결과, 문을 열 때 경첩의 공간지름이 최소 1.7cm에서 최대 4.52cm까지 이르고 있어 어린이 손가락은 물론 어른 손가락이 끼일 정도로 넓었으며, 실제 이 틈새에 연필과 볼펜을 끼우고 문을 닫은 결과, 볼펜과 연필이 쉽게 부러져 나갈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높은 사고 위험에 불구하고 경고문 등 표시의무사항은 안 지켜…….

-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모두 경첩에 의한 위해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경고하고 있지 않았으며, 조사대상 69개 제품 중 26.1%는 품질경영촉진법상 의무표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다른 조사의 결과는 전국 17개 병원에 수집된 어린이 안전사고 1천196건을 분석한 결과 62%인 741건이 집안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사고의 유형별로는 충돌 사고(22.9%, 170건), 날카로운 물품에 의한 사고(18.8%, 139건), 미끄러짐 사고(14.8%, 1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즉 충돌사고는 의자, 책상, 침대 등 가구 모서리에 부딪혀 얼굴 등이 찢어지는 사고가 많았고 미끄러짐 사고는 목욕탕, 화장실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각종시설물은 안전사

1) Borel v Fibreboard Paper Products Corp. 493 F. 2d 1076(5th Cir Court of Appeals 1973)

고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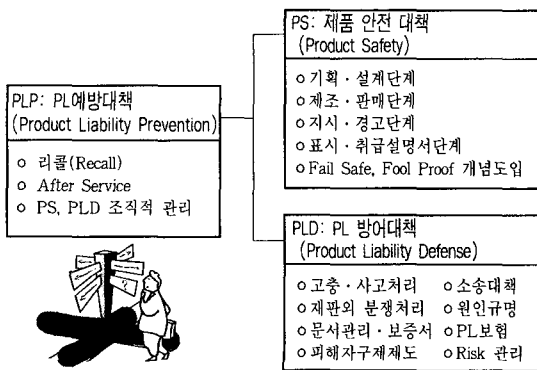
5. PL예방대책(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PL대책(PLP)의 개념

PL법에 대한 대응책은 크게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PL 예방대책), PS(Product Safety : 제품안전대책) 및 PLD(Product Liability Defense : PL방어 소송대책)의 세 가지로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대응책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1) 제품안전대책(PS) - PS라 함은 개발 제조 판매에서 사용·서비스·폐업에 걸쳐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PL의 원인이 되는 제품의 결함이나 제품사고 또는 불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대책으로서 사용자(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활동이다.

Man-Machine System 에 입각하여 Fail Safe(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의 안전장치 : 전기휴즈 등), Fool Proof(사람의 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안전 : 세탁기 덮개의 안전장치 등)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개발단계에서 안전설계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 PLP와 PS 및 PLD의 관계 >

(2) PL방어대책(PLD) - PLD라 함은 PL문제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고 소송이나 클레임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PL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사태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대책이며, 사전·사후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 제조물의 설계·제작당시 반증을 제시하거나 항변의 재료로서의 적절한 기록의 작성 보존이나 법정소환시의 증인육성교육 등은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은 늦고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대책들이다.

6. 결언

PL법에서 새로운 책임요건으로 등장한 것은 『결함』이다. 결함이 없으면 아무리 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제품안전대책의 핵심은 결함방지대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품자체의 결함은 연구개발·설계·제조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Fail safe와 Fool proof 개념을 도입하여 기술적으로 이를 사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PL 예방대책과 환경관련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기술적인 대책과 규제나 관리에 대한 적극적 대책 경영방침의 확립, 경영자의 PL마인드 확산, PL대책을 위한 전사적(全社的)인 대응체제의 정비, 규칙 매뉴얼의 정비,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재검토, PL법의 내용, 법률 지식, 사례, 상품안전성, PL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부서별·부문별로 교육도 실시하는 사전대응이 시급하며, PL발생시는 신속히 초기대응을 하고,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품회수의 Recall 수단시행,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규명, PL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원고 접수일 2002. 10. 5)